

운영규정 (개요)

목 차

1. 입소정원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3.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개요)

1. 입소정원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급여를 받은 자에 한하며, 그 정원은 108명(노인요양시설 96명, 치매전담실가형 12명)이며, 재해 등의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소 정원 및 거실의 정원을 초월해서 입소시킬 수 없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시설은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의 유지 및 개선을 통하여 가능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급여 서비스 제반 사항과 그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계약 기간 및 시설 이용료 등

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자는 [별지 서식 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다.

1. 시설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내에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당해 연도 고시금액에 의하며, 장기요양보험수가 변동에 따라 개인 부담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월이용료는 전달의 이용료를 해당 월의 20일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월이용료는 카드나 현금납부, 이용료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3.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4. 기타 비용부담액(비급여항목)(장기요양급여범위 제외사항): 시설은 이용 노인에 대한 이용료 외 기타비용부담액(비급여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비급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식사 재료비

나. 이·미용 서비스비용(단, 자원봉사자 및 시설 직원이 직접 제공 시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다.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

라. 상급침실 이용료 : 일반실(4인실)을 제외한 1, 2인실에 대해 1인실 200,000원, 2인실은 100,000원의 상급침실 이용료를 청구한다.

마. 경관 급식 이용자에 대해 제공되는 유동식 및 기타 비용을 실비로 청구한다.

5. 서비스 내용과 비용부담 : 시설은 입소자(이용자)에게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으로써 입소자(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별표 7] 시설급여 서비스의 세부내용의 의식주 서비스와 각종 프로그램(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훈련, 간호 및 처치, 시설환경관리,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기타 외출 시 동행 및 의사소통도움 등)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설급여 수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가. 일 3회 이상 영양, 기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나.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매일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변관리 및 구강 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라.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을 제공한다.

마.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바.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하고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한다.

사.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이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급여제공자, 입소자,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급여제공자, 입소자, 신원인수인(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급여제공자의 의무

가.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협조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케어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마.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바. 기타 이용자의 안락·안심·안전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각종 프로그램 참여 의무

마.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바. 기타 시설 생활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나.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1) 보호자는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자의 생명이 위협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입소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였을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9. 이용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 신청을 하였을 때

10.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11. 입소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할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료 및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보호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문을 통해 고지하며, 우편 및 기타 연락수단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여 급여제공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2.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사항에 대해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급여제공자, 입소자, 신원인수인(보호자)이 재계약을 체결한다.

③ 국민기초수급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소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이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며,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나.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진료 및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한다.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1)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

계한 후 귀원 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 어르신의 병원 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 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